

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20.12.09 개정 2021.11.05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설립이념 및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중장기 발전계획(이하 “발전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발전계획은 대학의 설립이념,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상, 핵심역량, 비전, 비전목표, 슬로건, 전략영역 및 핵심전략, 이행과제 등이 포함된 대학 운영의 기본계획을 말한다.
② 발전계획의 수립이란 대내외 환경분석, 대학 구성원 및 교내외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대학의 발전방향을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하게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.
③ 발전계획 운영이란 본 대학의 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이행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주관부서) ① 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.

-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
 2. 발전계획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
 3. 발전계획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업무
 4. 기타 발전계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업무

제4조(위원회) ① 대학의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.

1. 기획위원회
2. 자체평가위원회

- ② 기획위원회는 발전계획의 추진방향 결정 및 이행과제, 세부실행과제 수립 및 수정 등을 심의한다.
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발전계획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며, 사업 추진실적 분석,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 환류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며,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제5조(발전계획의 수립) ①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, 중요한 대내외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재수립할 수 있다.

- ② 발전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.
1. 환경분석(외부환경분석, 내부환경분석 및 대내외 수요분석 등)
 2. 기존 발전계획의 추진결과 및 한계점
 3. 구성원 의견수렴
 4. 만족도조사
 5. 대학특성화계획
 6. 중장기 발전계획 체계도
 7. 전략영역별 핵심전략 및 실행과제
 8. 이행과제 정의서
 9. 성과관리 체계
 10. 재정운용계획
 11. 기타 대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

- ③ 기획처는 교직원, 학생, 학부모 및 산업체, 지역사회 등 대학의 설립이념 및 사명에 부합하는 구성

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고,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TFT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.

④ 중장기 발전계획은 기획위원회, 교무위원회, 대학평의원회 및 이사회 심의를 거친다.

⑤ 기획처는 수립된 발전계획을 통해 대학의 설립이념 및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과 공유한다.

제6조(발전계획의 이행) 대학은 발전계획의 전략영역별 핵심전략 및 실행과제, 이행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각 부서는 발전계획에 기반한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, 예산을 집행한다.

제7조(이행과제 담당부서) 부서 통폐합·분리·부서 업무조정 또는 이행과제 담당부서 변경요청 시 사무부장관련 부서와 논의 후 변경한다.

제8조(발전계획의 평가) ① 기획처는 발전계획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행과제정의서에 따른 각 성과지표의 단계별 목표 달성 정도 및 세부활동을 성과관리체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. 다만, 필요시 그 시기를 조정 및 통합 할 수 있다.<개정 2021.11.05.>

1.<삭제 2021.11.05.>

2.<삭제 2021.11.05.>

3.<삭제 2021.11.05.>

4.<삭제 2021.11.05.>

② 세부 사업의 조정 필요시, 소관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신규 추가, 삭제, 조정한다.

③ 실무위원회는 발전계획의 이행과제별 개별 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, 성과지표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며, 연차별 성과평가보고서 등을 작성한다.

제9조(발전계획의 개선 및 환류) ① 발전계획의 성과평가 결과는 각 부서의 확인 및 개선계획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
② 발전계획의 성과평가 결과는 전 구성원과 공유하여 대학, 학과 및 부서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, 기획위원회에서 환류 내용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기획처는 환류 계획을 차기 발전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.

제10조(평가결과의 활용) ① 매 평가결과마다 발전계획 및 이행과제, 지표 등의 개선·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급 사항여부를 조사분석 한 후 추경예산 및 본예산 수립 시에 우선순위 결정과 사업비 조정에 반영하고, 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에 활용한다.

③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조직개선정책 및 인력운영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, 성과 미흡부서 지원방안 도출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정책을 수립한다.

④ 평가결과를 정책개선, 예산조정, 교육수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며, 정부의 대학 평가정책에 대비하여 연계·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지속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한다.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